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569
----------	-----

제출연월일 : 2009. 11. 2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기금관리공무원을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영) ①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용자신청을 받은 자치구청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시장에게 용자대상자를 추천하고, 대전광역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용자한다.

④그 밖에 기금의 용자대상, 우선순위, 용자조건 등 용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1. 복지여성국장 :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2. 보건위생과장 :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3. 기금담당사무관 : 기금지출관, 기금출납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식품위생법] [시행 2009.8.7] [법률 제9432호, 2009.2.6, 전부개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전부개정]

제62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17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1. 2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 11. 3

다. 상 정 일 자 :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사회위원회(2009. 12. 17)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조정례)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고나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기금관리공무원을 정함 (안 제8조)

Ⅲ.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태환)

-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법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Ⅳ.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